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NRF 한국연구재단
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NRF 한국연구재단
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일러두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예시는 올바른 인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임. 다양한 학문 분야에 따라 활용되는 인용 방법 및 범위가 다르므로 사례집에 수록된 예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함.
- 아울러 인용표기 방법, 관행, 엄격성 등은 해당 자료의 발표 시기, 학문 분야, 발표 형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본 책자에 소개된 사례나 설명이 특정 사건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음.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목 차

01 표절의 이해 06

1.1 출처표기의 중요성 08
1.2 표절이란? 09
1.3 중복게재의 범위 13

02 인용의 방법 18

2.1 인용의 원칙 20
2.2 대표적인 인용표기법 27
2.3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31

03 유형별 인용표기 적절·부적절 사례 32

3.1 도서 34
3.2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회 논문 47
3.3 연구보고서 68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82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84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92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102

부록 118

인용표기 관련 질의응답 사례 120
참고문헌 130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01

표절의 이해

1.1 출처표기의 중요성

1.2 표절이란?

1.3 중복게재의 범위

01 표절의 이해

1.1. 출처표기의 중요성

- 타인 혹은 자신의 연구내용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표절 및 중복게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표절과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는 학술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직성을 해치고, 작성한 저작물을 읽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임. 학술 연구에서 객관성, 정확성, 정직성 등은 매우 중요하며, 이 중 정직성은 출판 윤리의 핵심 요소임.
- 표절과 중복게재는 연구자의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내용을 사용할 때 올바른 출처표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출처표기를 누락하거나 혹은 정확한 출처표기를 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함.
- 타인의 학술적 내용을 자신의 논문 혹은 보고서에 인용하는 경우 올바른 출처표기는 원저작자의 학술적 공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표하는 동시에, 자신이 쓴 논문 또는 보고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논문이나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연구자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원저작자가 작성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출처표기를 통해 해당 부분의 인용 유무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연구자들이 올바른 인용법을 이해하고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1.2. 표절이란?

- 표절[1]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연구내용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표절은 타인의 논문에서 대부분 혹은 일부를 출처에 대한 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심각한 수준부터 실수로 출처표기를 일부 누락하는 경미한 수준까지 그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며, 출처표시를 했지만 인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시행 2018. 7. 17)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3]의 연구윤리 지침(2021. 6. 24 제정) 및 「연구윤리평가기준」(시행 2020. 8. 4.) 그리고 여러 대학교의 「연구윤리 지침」에 잘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그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3호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표절의 한자어인 '剽竊'은 '겁박할 표(剽)'와 '훔칠 절(竊)'이 합쳐진 단어로 '도둑질하다, 훔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표절의 영어 단어인 'plagiarism'은 '납치자'를 뜻하는 'plagiarus', '훔치다'의 의미를 가진 'plagiai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함.

2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칙」(제정 2021. 8. 9.)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3호에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타인의 연구를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협의의 표절과 함께 “자기표절(self-plagiarism)” 및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를 포함한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를 표절에 포함하여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출처표시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① 아이디어 표절

- 아이디어 표절은 ㉮ 타인의 고유한 생각이나 연구 착상, 분석 체계나 방법, 논문의 전개방식과 결론을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어진 가설이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자기가 최초로 주장하거나 만들어낸 것인 양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 학술발표에서 들었거나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들었던 타인의 아이디어를 마치 내 것인 양 쓰는 경우, ㉱ 연구비나 논문의 심사를 통해 심사자는 피심사자의 글에서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의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인용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임.[4)]

② 텍스트 표절

-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표절의 유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자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텍스트(단어, 문장, 문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copying)하는 행위로 복제 표절(verbatim plagiarism; copying)이라고도 함.

- 학술지 게재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투고 논문이나 연구비 신청을 위한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원저자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텍스트 표절에 해당됨.

③ 짜깁기 표절

- 타인의 여러 원저작물에서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로, 모자이크 표절(mosaic

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22.

plagiarism, 또는 patchwriting, paraphragiarism)이라고도 함.

- 짜깁기 표절은 타인의 글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와 짜깁기하여 쓴 글로, 복제 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음.

④ 말바꿔쓰기 표절

- 타인의 주장을 내 글에 소개하면서 원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 단어를 비롯해 글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 뜻만을 살려 표현하는 말을 바꾸어 쓰기(parapharasing)하거나, ㉯ 그 내용을 압축하여 기술하는 요약(summarizing)을 하는 경우로, 말바꿔쓰기(parapharasing) 표절이라고 함.

-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직접 인용"이 아닌 "간접 인용"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 방식)로 다시 말바꿔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함.

⑤ 데이터 표절

- 원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데이터(그림, 표, 그래프, 사진 등)를 자신의 저술에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져와 쓰는 행위로 데이터 표절이라고 하며, 이는 타인의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복사(copying)하는 행위이므로 복제 표절에 해당함.

- 리뷰 논문의 경우 그 특성상 타인의 논문에 실린 데이터(그림, 표, 그래프, 사진 등)를 직접 제시하면서 해당 연구결과를 설명해야 함. 참고로 원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면 표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데이터의 사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따라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출판사 등)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함.

출처표시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5)]

-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

① 잘못된 전문인용

- 타인의 글을 소개할 때,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많은 양의 글을 문단 그대로 옮겨(copy and paste) 쓰는 경우는 대부분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전문인용을 할 때, 들여쓰기와 따옴표(quotation marks)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 없이 출처만 표시하면서 그 글을 문단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 텍스트의 어느 부분이 가져온 글이고 저자 자신의 고유한 글이 어느 부분인지를 독자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② 포괄적·개괄적 인용

- 텍스트에서 인용한 글 각각에 대해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글의 맨 앞 또는 맨 뒤에서 이하 사례에서와 같이 한번 포괄적으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을 포괄적 인용이라 하며 이 경우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잘못된 전문인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어느 부분이 가져온 글이고 저자 자신의 고유한 글이 어느 부분인지를 독자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③ 부분적·한정적 인용

-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는 표절에 해당 해당될 수 있음.

④ 2차 문헌 표절

- 원문을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는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칙(2021. 8. 9.) 제9조 제2항에는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적절한 출처표시의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고서의 경우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음.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않은 경우

-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이전의 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표절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함.
-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표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전문 학술지의 출판 원칙이 다른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분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표절에 해당됨.

1.3. 중복게재의 범위

-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는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국내에서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시행 2018. 7. 17)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정의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에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타인의 연구를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표절과 함께 자기표절 및 이중게재를 포함한 중복게재가 표절에 포함되어 있음.
-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많은 학술단체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엄밀히 말해,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남의 글을 훔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자신이 발표한 과거 저작물의 일부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자 새로이 발표하는 글의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임.[6] 또한 학술적 가치가 크지 않은 논문을 손쉽게 만들어

6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0.

내어 쉽게 논문실적을 쌓는 부당한 행위로, 연구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

-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학회나 학술지를 발간하는 출판사에 저작권 양도(copy right transfer)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므로, 자신의 논문이라도 저작권은 학회나 출판사가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므로 이 경우 이미 학술지나 기타 저작물에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승인(copy right permission)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활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함.

중복게재의 유형

- 학문 분야에 따라 중복게재의 유형은 다양하여 획일화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복게재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음.

① 전형적인 중복게재

-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가 전형적인 중복게재의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연구 논문 등을 작성할 때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아울러 번역 출판임을 명시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번역 출판을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국문으로 발표한 후 해외 독자군을 위해 자신의 이전 결과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표하는 경우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고,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② 논문 쪼개기

-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서 연속 논문을 제외하고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중복게재를 쪼개기 출판(fragmented publication) 혹은 살라미(salami) 출판이라고 함.

- 이를테면 연구결과를 분할하는 것으로, 한 편의 논문은 방법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 편의 논문은 대상 중의 일부를 강조한다든지, 동일한 데이터를 다르게 분석한다든지 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함.[7]

- 이는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논리적으로든 내용의 완성도든 의미가 있는데, 업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연구자료를 '최소 출판 단위(least publishable unit, LPU)'로 잘게 잘라내어 각각을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임.[8]

- 논문 쪼개기 중복게재의 특성은 비교되는 두 저작물 사이에 서로 출처(cross reference)를 언급하지 않으며, 참고문헌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임.

③ 논문 덧붙이기

- 논문 덧붙이기는 논문 쪼개기와는 정반대로 이미 출판된 논문에 일부 결과를 추가해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논문을 출판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이전 논문에 일부 결과나 대상자의 수를 덧붙여 출판하는 것으로 제목은 다르지만 이전 연구와 겹치거나 연관된 측면을 보고하거나 저자의 순서가 다르거나 저자가 아예 다를 수 있음.[9]

- 논문 덧붙이기는 이전 논문과 대상이 중복되고 결론의 핵심적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출판된 논문에 비해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크지 않아 신규 논문으로서의 독창성 혹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논문 덧붙이기 중복게재의 특성은 비교되는 두 저작물 사이에 서로 출처(cross reference)를 언급하지 않으며, 참고문헌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임.

7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8.
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8.
9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8.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시행 2018. 7. 17)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및 여러 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에 잘 명시되어 있음.
- 연구의 독자성 혹은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이 작성한 부분에 비해 주(主)가 된다면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시행 2018. 7. 17)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부당한 중복게재"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중복게재를 한 후 그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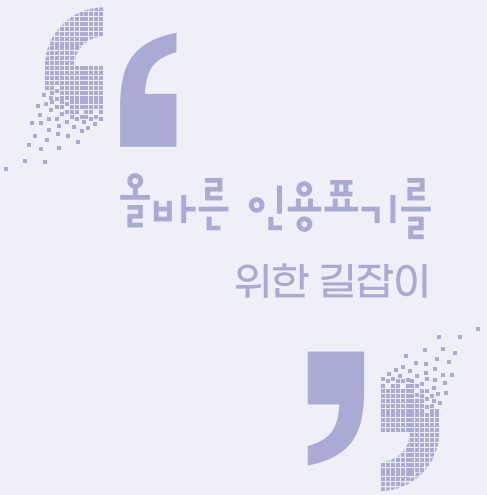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02

인용의 방법

2.1 인용의 원칙

2.2 대표적인 인용표기법

2.3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02 인용의 방법

2.1. 인용의 원칙

-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각 학문분야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인용부호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함.
- 연구자의 인용 목적은 ㉮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 공통되거나 상반되는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 자신의 학술적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고자 기존에 출판된 연구 논문의 권위에 의한 도움을 받기 위해, ㉱ 참고문헌을 통해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임.
-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전자는 인용 부호(quotation mark)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임.
- 올바른 인용은 논문과 보고서 작성에서 타인의 글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윤리이고 예의임. 또한 인용은 연구자가 원저자에게 그의 글과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credit)을 한다는 표시이며, 표절의 문제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10)]
- 인용은 원래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밝히는 것이고, 저자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을 쉽게 해주며, 인용을 통해 독자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적절하게 인용 해야 함.[11)]
- 인용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둘째,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10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1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함.[12)]

- 표절은 일차적으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발생하므로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또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인용을 제대로 해야 표절을 예방할 수 있음.[13)]

- 즉,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되 그것이 공정한 인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정한 인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함. 둘째,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 셋째,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됨.[14)]

- 올바른 인용 방식은 국가마다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달라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저자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타인의 저술에서 인용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히 밝히면서 원저작자의 학술적 기여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임.

- 학문의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선행 연구 아이디어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때 원저자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활용해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당하게 인용해야 함.

- 정당한 인용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들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 존중과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임.

- 저작권법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그 인용 목적도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만 인정하고 있음.[15)]

1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13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1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6-117.

15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8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제37조 제2항에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본적인 인용 방법[16]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 일부 단어를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학술적 기여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사해야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 부호(“ ”)뿐만 아니라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여 해당 부분이 타인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밝혀야 함.
- 자신의 저작물에서 기술하는 부분이 특별히 인용할 필요 없는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함.
- 웹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 또는 단행본에 있는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통계 자료와 같이 본인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는 출처를 밝혀야 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윤리 평가기준에 기본적인 인용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특히 ㉮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하며, ㉯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하며, ㉰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말바꿔쓰기 방법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인용의 분량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 되고 자신의 것이 주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16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118-119.

인용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그 인용의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할 수 있음.[17]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출처표시 방법에 따르면서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18]
-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직접 인용이 아닌 간접 인용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 방식)로 다시 말바꿔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주어야 함.
- 원저작물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저술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표현을 바꾼다고 해도 표절에 해당됨.
-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 연구자는 원저작물에 있는 원문과 거의 비슷한 말로 쓰지 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새로이 작성하되 출처표시를 하여야 함.
- 말바꿔쓰기를 했지만 타인이 쓴 독특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를 표시해 주어야 함.

출처표기의 대상

-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가 출판되었든 출판되지 않았든 출처표기를 명확히 해야 함. 그래야 다른 연구자들이 인용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또는 관련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기준 제13조에는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출처표기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 인쇄된 자료로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proceeding) 등 출판된 모든 자료, ㉯ ProQuest와 Lexis-Nexi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개인이나 단체 및 정부 또는 기관 웹사이트, 블로그,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있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출판된 것이거나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등 전자 자료, ㉰ 정부가 출판한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지표 등 데이터, ㉱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이미지, ㉲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오디오 파일(podcasts) 등의 기록물, ㉳ 개인과의 대화, 인터뷰, 강의나 포스트 세션 그리고 학술 세미나

17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19.
1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19.

등에서 얻은 정보 등 구두자료(spoken material) 등 임.[19]

- 그러나 비공개 전문가 토론 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 자료, 정부부처 비공개 자료, 발주기관 비공개 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자신의 연구를 인용하는 방법

①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 출판

- 학계에서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용어와 형식을 바꾸어 다른 학문 분야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발표하는 것을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이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음.
- 국문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재발표하는 이차출판을 위해서는 ㉮ 논문을 발표한 국내 학술지의 편집자로부터 자신의 논문을 번역하여 이차출판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 번역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국제학술지의 출판사 혹은 편집장으로부터 이미 발표한 논문의 번역본 투고에 대한 저작권 승인을 얻어야 하며, ㉰ 이 번역논문이 심사를 통과해서 출판될 때, 그 논문의 첫 페이지에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Korean Journal of--”와 같이 출처정보를 밝혀야 함.[20]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됨.
-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는 중복게재 중 논문 쪼개기인 살라미 출판에 해당될 수 있음.
- 살라미 출판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여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연구의 특성과 분량으로 인해 몇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논문 혹은 이미 투고되어 심사받고 있는 논문 원고의 존재에 대해 출처표시를 하여야 함.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p.56.

20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 (http://www.icmje.org/publishing_4overlap.html)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②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사이의 인용

학위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는 경우

- 학위 논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동료심사(peer review)의 절차를 거쳐서 보다 완성도 있는 논문으로 출판되어 동종 분야 학계의 학자들에게 전파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됨.

-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 활동이나, 학문 분야별로 출판 허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 예로서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술지 논문 첫 페이지 하단이나 각주로 해당 논문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논문 투고 전 해당 학술지의 출판 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연구자들이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출판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출판하여야 함.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 다수의 이공계 학과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며, 학위 연구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이후 학위 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 논문에 삽입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할 수 있음.

- 타인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인용표기 없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 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타인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면 텍스트 표절과 데이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야 함.

③ 학술대회 초록과 프로시딩[21]

- 학술대회 발표 초록과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에 제시하였던 자료와 그림은 추후에 본인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사용될 수 있음.
-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아직 검증받지 아니한 가설을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어 이의 타당성을 묻는 연구 활동의 일부임.
- 초록은 하나의 완성된 논문이 아니며, 연구실적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학술대회 프로시딩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부수만이 출간되며 그 보급 경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람이 어려운 문헌으로 분류되는 회색문헌(grey literature)으로 간주됨.
- 동료심사를 거쳐서 논문을 엄격히 선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시딩의 논문은 대부분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학술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구두로 또는 포스터를 통해 학술대회장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추후에 학술지 논문에 발표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용인되고 있음.
- 다수의 인문·사회 및 공학 분야 학회에서는 프로시딩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있고, 프로시딩 발표 후 정식 논문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학술대회 프로시딩 자료 혹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
- 그러나 프로시딩 등 학술 대회 발표 논문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개된 후 이를 정식 학술지 논문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표하는 경우 이중게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학술지 투고 시 “본 논문은 다른 매체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저자 서약을 위반하기 때문임.

21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5.

- 프로시딩 등 학술 대회 발표 논문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의 일부가 이미 학술대회에 프로시딩으로 발표된 사실을 밝히고, 새 논문이 과거에 발표된 프로시딩에 비해 어떠한 새로움과 학술적 기여가 있는지를 밝히고 논문 편집자의 승인을 받아 출판하여야 함.

2.2. 대표적인 인용표기법

- 학문 분야나 학술지마다 인용 방법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논문 작성 시 반드시 학술지가 요구하는 형식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인용표기를 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어문학, 인문학 분야는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양식을 주로 사용하며, 사회과학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 일반적인 문헌 인용은 시카고(Chicago) 양식, 생·의학분야 및 간호·보건학 분야의 학술지들은 밴쿠버(Vancouver) 양식, 화학 분야의 학술지는 ACS (Americal Chemical Society) 양식, 생물학 분야 학술지는 CSE(Council of Science Editors) 양식, 전기·전자공학 분야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

①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

- 미국심리학회의 형식으로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건 및 간호학 분야 학술지에서 기본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APA 양식은 본문의 인용하는 부분에 (저자-연도) 형식으로 참고한 문헌의 정보를 제공하고 논문 참고문헌 부분에 본문에 인용한 문헌을 저자 이름 가나다, 알파벳 순서로 기술하며, 학술지명 등은 보통 Full Name을 사용하고 저자명은 성, 이름 이니셜로 기술함.

〈참고. APA 인용 예시[22]〉

구분		예시
도서	일반형식	Author, A. A. (Year). *Title of book: Subtitle of book* (Edition). Publisher.
	참고문헌	Jackson, H. (2012). *Strategies today: The best strategy to build a house*. Penguin Random House.
	본문 내 인용	(Jackson, 2012, p. 34)
정기간행물 (논문)	일반형식	Author, A. A. (Year). *Title of article. Title of Periodical*, Volume(Issue), pages. DOI
	참고문헌	Ramirez, B. (2011). Having a powerful headline is important. *Modern Writers Journal*, 32(6), 4–6. https://doi.org/10.35759.30495.30495.4506
	본문 내 인용	(Ramirez, 2011)
웹페이지	일반형식	Organization. (Year, Month Day). *Title of webpage*. Website name. URL.
	참고문헌	University of Oxford. (2021, Jauary 20). *Organization*. University of Oxford. https://www.ox.ac.uk/about/organization
	본문 내 인용	(University of Oxford, 2021)

②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양식

- 미국 현대 어문학 협회의 양식으로 인문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951년 William Riley Parker에 의해 “MLA Style Sheet”로 발표된 것이 그 시초임.
- MLA 스타일은 내주(in-text citation)-참고문헌(reference) 방식을 사용하는데,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완전한 인용 정보는 참고문헌에서 찾는 방식임.

22 Appearance Publishers, 『APA/MLA guidelines: Concise Guide to APA and MLA Styles』, 2021, pp.87-91.

〈참고. MLA 인용 예시[23]〉

구분		예시
도서	일반형식	Autuor's Last Name, First Name. *Book Title: Book Subtitle*. Publisher, Date.
	참고문헌	Garcia, Savannah. *A Surprise Birthday Party: When the Last Bell Goes*. HarperCollins, 2018.
	본문 내 인용	(Garcia 79)
학술논문 (인쇄)	일반형식	Autuor's Last Name, First Name. "Article Title." *Publication Title*, vol.#, no.#, Date, pp.#-#.
	참고문헌	Moore, Josiah. "Writing and Performance as Path." *Social Action*, vol. 3, no. 14, 2020, pp.213-25.
	본문 내 인용	(Moore 213)
웹페이지	일반형식	Author's Last Name, First Name. "Webpage Title." *Website Name*, Publisher, Date, URL. Accessed Date.
	참고문헌	Edwards, Oliver. "Liberty is Not Anarchy." *Geomaterials*, 22 Oct. 2017, www.geomaterials.com/libertyisnotanarchy/. Accessed 11 May 2021.
	본문 내 인용	(Edwards)

③ 시카고(Chicago) 양식

- 시카고 양식은 1906년 시카고 대학 출판부가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체제와 형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작성한 한 장 분량의 기준이 모태가 되었음.
- 시카고 양식은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는데 각주-참고문헌(Notes-Bibliography) 형식으로 출처 표기 부분 문장에 숫자를 삽입하여 각주(미주)로 처리한 후 문서 마지막의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모든 참고문헌을 정리함.

23 Appearance Publishers, 『APA/MLA guidelines: Concise Guide to APA and MLA Styles』, 2021, pp.195-209.